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 설 기 계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 수납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절차 마련 (안 제17조의5 신설)

-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2) 건설기계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더라도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3)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 4)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 (안 제19조제2항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2의2 신설)

- 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마련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3)

- 1)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 등록번호표 미부착·미봉인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 2)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부과 대상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 법 제4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시·도지사 :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5호의3 및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5호·제5호의3·제7호 및 제8호, 같은 조 제3항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를 “법 제8조의2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조의2제5항제2호”를 “법 제8조의2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란의 행정처분의 기준의 3차 이상 위반란 중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를 “법 제8조의2제7항제3호”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2호	20만원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다. 법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3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2	<u>100만원</u>	<u>200만원</u>	<u>300만원</u>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4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5호	3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5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7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

		초과 시마다 1만원 을 가산한다)	초과 시마다 2만원 을 가산한다)	다 3만원을 가산한다)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 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 치가 <u>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u> <u>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u> <u>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또는 사</u> <u>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u>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 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 거리계 · 운행기록계 2) 제10조의2제1항제5호 · 제6호, 제 10조의2제2항제1호 · 제4호 · 제5 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 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 제1 3호 및 제20호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 · 제11호 및 제19호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 제2항제2호 · 제3호 · 제6호, 제14호 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 계 ·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 1호	법 제44조 제2항제5 호	100만원 30만원 5만원 3만원	100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100만원 100만원 20만원 10만원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법 제44조	<u>10만원</u>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1 호의2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파. 법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 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5 호의2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하.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5 호의3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거.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7 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너.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8 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3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러.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 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 호	40만원	50만원	5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을 가산한 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2만원 을 가산한 다)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 하는 경우 3 일 초과 시마 다 3만원을 가산한다)
버.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 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 호의2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을 가산한 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2만원 을 가산한 다)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 하는 경우 3 일 초과 시마 다 3만원을 가산한다)
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0 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 하는 경우 3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을 가산한 다)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2만원 을 가산한 다)	일 초과 시마 다 3만원을 가산한다)
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 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경우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1 호	40만원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1만원 을 가산한 다)	50만원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 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 다 2만원 을 가산한 다)	50만원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 하는 경우 3 일 초과 시마 다 3만원을 가산한다)
저.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 여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 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 를 대여한 경우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법 제44조 제2항제7 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40만원	50만원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만원	50만원	7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처.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법 제44조 제1항 제1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u>호의4</u>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한다)		
		2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을 가산한다)
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8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2호	5만원	10만원	30만원
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법 제44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 피한 경우	제1항제3 호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5조제2항 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4 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별표 3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호 러목2), 같은 호 머목2), 같은 호 버목2), 같은 호 서목2) 및 같은 호 저목”을 “같은 호 머목2), 같은 호 버목2), 같은 호 서목2), 같은 호 어목2) 및 같은 호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목·타목”을 “자목”으로, “러목2)”를 “머목2)”로, “머목2)”를 “버목2)”로, “서목2)”를 “어목2)”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호타목의 경우 : 300만원

별표 3 비고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제2호버목2)”를 “제2호서목2)”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2호 중 “50만원을”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50만원으로”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로 한다.

마. 제2호처목의 경우: 200만원

별표 3 비고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호나목의 경우 : 50만원

나. 제2호타목의 경우 :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법 제8조의2제7항제1호	1차 : 3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법 제8조의2제7항제2호	1차 : 100 2차 : 300

나. 검사대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4항제2호	1차 : 1,500 2차 : 3,000
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한 경우 나) 법 제1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14조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제4항제3호	1차 : 1,000 2차 : 2,000 1차 : 1,000 2차 : 2,000 1차 : 1,000 2차 : 2,000
3)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4조제4항제3호의2	1차 : 500 2차 : 1,000

다.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해체 재활용업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의 2제1항제3호	1차 : 100 2차 : 300	1차 : 100 2차 : 300	1차 : 100 2차 : 300	1차 : 100 2차 : 300
2)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 하여 건설기계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5조의 2제1항제4호	1차 : 300 2차 : 900	1차 : 300 2차 : 900	1차 : 300 2차 : 900	1차 : 300 2차 : 9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5(과징금의 부과·징수)</u> ① <u>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u> <u>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u> <u>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u> <u>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u> <u>와 같다.</u> ②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u> <u>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u>법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u> <u>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u> <u>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u> <u>의 금액, 수납기관을 명시하여</u> <u>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u> <u>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u> <u>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u> <u>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u> <u>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u> <u>부과 대상자의 주소·거소를 알</u> <u>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u> <u>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u> <u>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u> <u>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u> <u>한다.</u> ③ <u>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u>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략)
<신 설>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 법 제44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의2 및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u>자</u> 2. <u>시·도지사 : 법 제44조제1항</u> <u>제1호·제1호의2·제2호 및</u> <u>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u> <u>터 제5호까지·제5호의3 및</u> <u>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u> <u>터 제7호까지·제11호 및 제1</u> <u>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u> 3.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법</u> <u>제4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3</u> <u>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u> <u>및 제8호, 같은 조 제3항제9호</u> <u>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u> <u>당하는 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연 락 처	(044) 201 - 3544